



이은영
한국여성법률가협회 회장

가족법, 여전히 여성과 어머니를 차별하고 있다

법을 통해 본 여성

최 근 들어 특히 가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낮아지는 혼인율과 출산율 급증하는 이혼율로 대표되는 가정해체의 징후는 예사롭지 않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확산, 사회안정망의 부재 등 가정의 위기와 관련하여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인 것은 다행스럽지만 일차적으로 가족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가족문화 걸림돌-호주제

우리 사회는 해방과 전쟁,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현해 왔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개인의 가치관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경제에 기반한 대가족제도는 급속히 해체되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이나 가치관, 가족문화 및 제도는 여전히 농경제 사회의 남성중심 대가족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족윤리를 창출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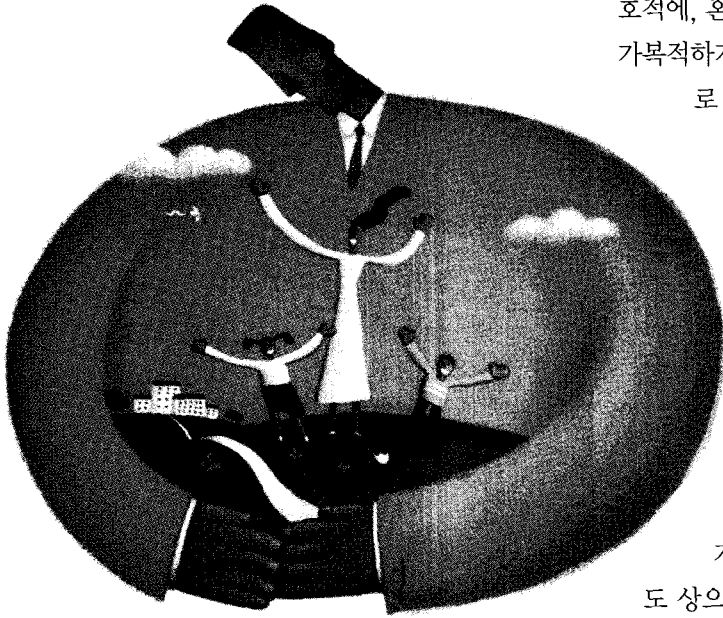
우리 가족법에 호주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부부평등의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본다.

우리 민법은 호주승계순위에 대해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성을 우선 순위로 하고 남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성이 2차적으로 호주를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남성이기만 하면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과 관계없이 성인인 어머니, 누나, 할머니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아들이 없을 경우 혼인 외의 아들이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선하여 호주가 된다.

또한 오늘날의 호주제는 일제 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화되고 변질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조선의 가족제도를 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에 이식하였다. 일본은 패전 후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나, 우리는 식민 침략으로 강제적으로 이식된 호주제를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가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 껴 앉고 있다.



여성과 어머니를 차별하고 있는 가족법

초등학교에 여자 짝이 없어서 울상인 남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성비는 130을 넘어서고 있다.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더욱이 셋째에 가면 아들이 더 많은데, 이유는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있다. 이것을 한 부부 또는 한 집안 만의 불법 행위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끊기지 않고, 아들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다는 사회적 관습과 이를 기초로 성립된 각종 법률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호주제에서 비롯된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들은 태어날 권리조차 유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민법 제781조)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父家)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한 것이다. 즉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연속적인 존재이다.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 없다. 현재 이혼한 여성 중 상당수가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기 원하지만 호주제에 근간한 현행 호적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분가할 경우 혹은 여성이 재혼할 경우 그 남편이 자녀를 입양한다면 여성은 자녀와 함께 호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민법 제781조 성과 본의 규정으로 인해 양부 또는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이것 역시 남계 혈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정면배치되는 호주제는 그 존재 이유가 의문시된다.

진정 오늘날 가족의 위기를 염려한다면 호주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가족법을 개정하여, 21세기에 걸맞는 가족정책 -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법을 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PK**